의안번호		제 2 호
심	의	2023. 3. 30.
연 4	일 일	(제 00 회)

심의사항

#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(안)

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

제 출 자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
제출 연월일	2023. 3. 30.

#### 1. 의결주문

○ 「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(안)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

#### 2. 제안이유

○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29조 제1항에 따라,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인「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(안)」을 마련하고자 함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현장중심 연구제도 개선절차의 의의
  - ① 국가연구개발 체계화와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
  - ② 연구기관과 과제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, 연구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고도화
- 나. 2023년도 연구제도 개선절차 운영경과
  - 기본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(과기정통부, '22.11~'23.2월)
  - **현장 애로 파악** 및 **국가연구개발의 도전성 강화 등**을 위한 연구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산·학·연 전문가 및 제도개선위원회 의견 수렴 \* 주제별, 주체별, 권역별 및 정책전문가 의견 수렴
  - 2 기본지침 마련 (과기정통부, '23.3월)
  - o 현장 연구자 및 제도개선위원회 (3.9.) 등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을 마련

#### 다. 2023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

#### ① 연구몰입 지원 강화 및 연구자 권익 보호

- o 혁신법과 달리 연구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**부처규정**을 **지속 정비**하고 **연구현장**에서 **관심 많은** 제도·시스템에 대한 **현장교육** 확산
- 연구개발비와 관련한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관행을 혁파하고
  중복제출서류를 최소화하여 연구자의 행정부담 경감
-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역할 강화를 위한 **간접비 원가산출방식 개선** 및 신뢰성 높은 회계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원가 **회계시스템 개선 방향 검토**
-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내실화, 박사 후 연구자 지원 강화 등 신진
  연구자에 대한 지원 안정화

#### [2]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 강화

- **임무지향형 연구개발** 등 **중장기 대형과제**에 대하여 **환경변화**에 따라 목표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할 수 있도록 **연구 유연성 제고**
- o 국제협력의 활성화 등 **국가연구개발의 개방성 제고**를 위해 국제공동 연구 관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 및 **행정부담 완화** 등 검토
-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및 지방현장과 밀접한
  연구 등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애로사항 해소방안 검토

####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기업 참여 촉진

- 규모·위험이 크고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**초기 기초연구**에 대한 대기업 참여유인 제고
- 정부납부 기술료제도, 부도·폐업·파산 등 경영악화 시 정산금 유예, 평가체계 개선 등 기업 및 연구분야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검토
- o 효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**창업 초기기업, 중소기업** 등에 대한 지원 검토

#### 4 핵심 연구자산 유출방지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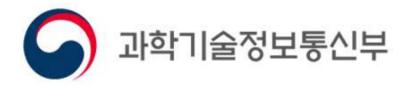
- o 전략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동향에 대응하여 혁신법령 및 부처규정 정비 등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
- 이해상충방지방안에 대한 선진사례(미·일 등)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보안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사항을 검토

#### 라. 향후계획

- 연구제도 개선 의견 제출 (관계부처('23.4월), 연구현장('23.4월 ~ 5월))
- 연구현장, 부처(전문기관) 등은 기본지침을 고려한 '제도개선 의견 제출서(붙임)'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제안
- ② 제도개선안 검토·수립 (과기정통부, '23.6월 ~ 8월)
- '제도개선 의견 제출서'를 제도개선위원회와 함께 검토하고,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안(과기자문회의 심의) 수립·통보
- ❸ 연구제도 개선 (과기정통부 및 관계부처, '23.9월 ~ )

#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(안)

2023. 3.



# 목 차

I.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의의 및 근거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
Ⅱ. '23년도 연구제도 개선절차 운영 경과 ····· 2
Ⅲ. '23년도 제도개선 기본지침 3
1. 연구몰입 지원 강화 및 연구자 권익 보호 4
2.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 강화 5
3.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기업 참여 촉진 6
4. 핵심 연구자산 유출방지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화 7
IV. '23년도 제도개선 향후계획 ······ 8
붙임. 제도개선 의견 제출서 양식9
참고.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및 현장의견수렴 추진 경과 11

## I.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의의 및 근거

### 1 의 의

- 선도적 연구 촉진을 위한 **연구개발 체계화**와 **연구자 중심**의 **연구**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제도\*(이하 '연구제도') 개선
  - \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및 그 하위규정, 각 부처의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시책 등을 포괄
  -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**기술패권 시대에 대응**하고 사회문제 해결 등 **과학기술의 파급효과**가 **삶의 질 제고**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
- o 국가연구개발의 **자율성**과 **책임성을 동시에 높이고**, **연구자**의 **권익을 보호**하여 보다 나은 연구환경을 달성하는 법 취지의 지속 추진
  - 국가연구개발혁신법(이하 '혁신법') 취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며, 연구기관·과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 체감형으로 제도 고도화

## 2 운영 근거: 「연구개발혁신법」 제28조~제30조

- (법 제28조) 정부는 매년 이해관계인·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, 누구든지 연구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
- o (법 제29조) 연구제도 개선의 체계화된 절차 마련
  - (제1항) 과기정통부는 당해년도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작성(과기자문회의 심의) 하고 3월31일까지 관계부처에 통보
  - (제2항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과기 정통부에 4월30일까지 제출
  - (제3항) 과기정통부에서는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 (과기자문회의 심의)하고 8월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
  - (제4항) 관계부처별로 다음연도 소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반영
- (법 제30조)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내부규정과 이에 근거한 활동에 대해 정부에서 개선 권고(과기자문회의 심의)하고, 이행 실태 확인·점검

# Ⅱ. '23년도 연구제도 개선절차 운영경과

#### ① 기본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위원회 출범

o 연구현장 애로 파악 및 국가연구개발의 도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산·학·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

#### ─<연구현장 의견 수렴 경과('22.11.~'23.2.)>─

- o (주제별) 국제협력, 도전혁신, 사회문제해결 연구, 연구보안에 대한 의견수렴
- o (주체벌) 대학, 출연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 연구개발기관 특성에 따라 의견수렴
- o (권역별) 수도·강원, 충청, 호남, 영남 등 각 권역의 전문가 의견수렴
- ㅇ (기 타) 정책 전문가 등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
- 제도개선 전 과정에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**산·학·연** 전문가로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 ('23.1월)
- □ 제도개선위원회·과기정통부가 함께 제도개선 기본방향 및 연구현장 의견 우선순위 등을 검토

#### ② 기본지침 마련 (과기정통부, '23.3월)

- o 현장 연구자·제도개선위원회 등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2023년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을 마련
  - \* 제도개선위원회 상정 및 의견 검토 (3.9.)

#### - <제도개선위원회 주요 검토 의견> ---

- o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파견비 인정범위 확대 등 연구비 사용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
- o 연구자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IRIS 시스템을 정교화할 필요
- ㅇ 연구보안을 연구진실성 및 연구윤리 차원에서 접근하여 체계화할 필요

# Ⅲ. '23년도 제도개선 기본지침

목표

# 자율기반의 선도적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연구성과를 보호하는 R&D제도 기반 강화

#### ① 연구몰입 지원 강화 및 연구자 권익 보호

- 1)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부처규정 지속정비 및 혁신법 현장교육 확산
- 2) 종이문서 보관관행 혁파 등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
- 3) 간접비 산출방식 개선 등을 통한 연구지원 모색
- 4) 학생연구자, 박사 후 연구자 등 신진연구자 지원 안정화

#### ②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 강화

- 1) 환경변화에 대한 연구 유연성 제고
- 2)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제도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 활성화
- 3)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지원 및 사회문제해결형 연구 애로사항 해소

# 추 진 방*향*

####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기업 참여 촉진

- 1) 양자 등 초기 기초연구에 대한 대기업 참여유인 제고
- 2) 정부납부기술료 제도, 정산금 유예근거 등 기업 특성 반영 제도개선
- 3) 창업 초기기업,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연구환경 지원

#### ④ 핵심 연구자산 유출방지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화

- 1) 기술패권시대에 대응하여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
- 2) 이해상충방지방안 등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 보완

#### 연구몰입 지원 강화 및 연구자 권익 보호

#### 1)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부처규정 지속정비 및 혁신법 현장교육 확산

-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혁신법 취지와 달리
  연구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부처·전문기관 규정을 지속 정비
  - ※ 1년 미만 과제도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등 혁신법 상 예외조항을 소극적으로 인정, 자율을 부여하는 혁신법과 달리 장비구매 자체규정 적용 등
- o 협약 변경, 연구개발비 집행, 연구성과 관리 등 **연구자**들이 관심 많은 제도에 대한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 교육 확산
  - ※ 범부처통합시스템(iris) 내 제도문의 게시판 내실화. 괴학기술인력개발원(KIRD) 교육 신설 등

#### 2) 종이문서 보관관행 혁파 등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

-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보관면제 규정의 명확화\*,
  등록된 자료에 대한 제출요구 금지규정 신설 검토
  - \* 예시 : (現)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→ (改)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
- o 협약 및 연차보고 시 제출 필수서류를 체계화하여 알리고, 과제 신청·정산·평가 시 제출서류 가소화\*등 시스템 고도화 지속
  - \* 신청자격(중소·벤처 여부, 신용정보), 연구실적(논문, 특허, 표준 등), 행정정보 (국세청·관세청 정보 등) 외부시스템 연계를 통해 행정서류의 중복제출 최소화

#### 3) 간접비 산출방식 개선 등을 통한 연구지원 모색

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역할 강화를 위한 간접비 원가산출방식 개선 및 신뢰성 높은 회계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원가 회계시스템 개선 방향 검토
 ※ (예시) 간접비 중 연구활동에 사용한 비용의 정확한 산출을 위한 세부기준 보완

#### 4) 학생연구자, 박사 후 연구자 등 신진연구자 지원 안정화

- o 학생인건비 기관단위 통합관리 내실화 등을 통해 학생연구자 지원을 안정화하고, 박사 후 연구자의 연구몰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\* 검토
  - \* (예시) 간접비로 박사 후 연구자 인건비 계상가능한 제도의 활용 활성화방안 마련

#### 2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 강화

#### 1) 환경변화에 대한 연구 유연성 제고

o 중장기 대형과제(예: 임무지향형 연구개발)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과제목표 변경 및 중단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특별평가제도 활성화

#### 2)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제도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 활성화

- 국가R&D사업에 국외기관 참여가 가능함을 명확화\*하고, 협약·평가·연구비 등 연구수행 단계별 국제공동연구 관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 검토
  - \* (예시) 국외기관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 내 기재방법 : (現)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→ (改) 국외기관

#### < (가칭)'국제공동연구 관리 가이드라인' 예시> -----

▶ (구) 공동관리규정과의 비교를 통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제공동연구 관리 방안을 연구수행 단계별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

분야		주요내용	
과제선정	1. 국제공동연구 정의	2.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	3. 과제 선정
협약	1. 협약 대상 및 기간	2. 협약의 변경	
연구개발비	1.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	2. 연구개발비 계상기준	3. 연구개발비 정산
연구개발성과	1. 연구개발성과의 공개	2. 연구개발성과의 소유	

o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 등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사용의 유연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 검토

#### 3)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지원 및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의 애로사항 해소

- 포상형 연구개발 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
 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 검토
- 지방현장과 밀접한 연구 등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수행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방안 검토

#### 3

####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기업 참여 촉진

#### 1) 초기 기초연구에 대한 대기업 참여유인 제고

- 규모·위험이 큰 양자 등 초기 기초연구에 대하여 정부지원
  연구개발비 기준 상향 등 참여유인 제고
  - ※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관련 소부장 기업과 같이 별도 가이드라인 제시 검토



#### 2) 정부납부기술료 제도, 정신금 유예근거 등 기업 및 연구분야 특성 빈영 제도개선

-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주요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여
 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방향 등 검토
- 부도·폐업·파산 등 경영악화 시 정산금 등을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검토
- 평가의견으로 기초연구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,
  대학과 다른 기업 평가체계 개선 검토

#### 3) 창업초기기업,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연구환경 지원

- 창업 초기기업,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연구몰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검토
  - ※ (예시) 중소기업 연구개발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출연연의 中企 기술지원 촉진을 위한 파견비 계상범위 확대

#### 4

#### 핵심 연구자산 유출방지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화

#### 1)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여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

- 기술패권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연구자율성·개방성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방안 마련
  - 연구보안 관련 법령체계 종합분석을 통한 연구보안 법령체계 재정립
  - 연구보안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**부처별**로 **상이**한 **용어·기준**, 규정에 대한 **정비** 추진

#### 2)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연구보안제도 보완

- o 해외(미국, 일본, 영국, 호주) 정부 등의 동향, 연구기관의 연구보안정책, 기술탈취 위험사례 등 **연구보안 해외사례** 제시
  - ※ OECD는 포괄적인 연구진실성 안에서 연구안보 정책이 추진되기를 권고('22년)
  - ※ 미(美)·일(日) 등 주요국은 외국 기관 또는 외국인과의 연구 협력 과정에서 자국 핵심 연구자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장려

#### <(예시) 기술탈취 위험사례>

- (**A국 \*\*대**) 연구기관과 당과의 협력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대학헌장을 수정하여, OECD는 A국 \*\*대와 공동연구하는 해외기관의 연구성과 탈취 우려('21)
- (A국 ##대) 군과 긴밀히 공조하며 졸업생 상당수는 국방분야에 취업.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수출제한 대상(Entity List)으로 포함('20)
- 이해상충방지방안 등에 대한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보안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사항을 검토

# Ⅳ. '23년도 제도개선 향후계획

#### ① 제도개선 의견제출 (관계부처('23.4월), 연구현장('23.4월 ~ 5월))

- 연구현장, 부처(전문기관) 등은 기본지침을 고려한 '제도개선 의견 제출서(붙임)'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제안
  - 법령 시행 이후 제도개선 필요 사항 및 기본지침에 제시된 **기본방향**에 대한 **구체적인 이행방안** 제안
- 기본지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도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에서 제안하는 제도개선 과제 및 개선방안 적극 반영

#### ─ < 상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> ─

- o **온라인 소통창구**(익명제안도 가능)를 통해 **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을 접수** ※ 접근경로 : IRIS(iris.go.kr) > 알림·고객 > R&D 제도문의 > '23년 R&D 제도개선 제안
- o 연구현장의 **공감도, 시의성** 등을 **종합적**으로 **검토**하여 제도개선안 반영 여부 결정

#### ② 연구제도개선안 검토·수립 (과기정통부, '23.6월 ~ 8월)

- '제도개선 의견 제출서'를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,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(과기자문회의 심의) 수립·통보
- o 연구현장, 부처 등에서 제안한 과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, 중·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'24년도 이후 제도개선안에 반영

#### ③ 연구개발 제도개선 (관계부처, '23.9월 ~)

'23년도 연구제도 개선안에 따라 부처별로 소관 법령 및 행정 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

# 붙임

# 「제도개선 의견 제출서」 양식 (부처의견 수렴용)

*	작성 방향	
1	「연구개발혁신법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안	
	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에 따라 <b>신설</b> 되거나 <b>개선</b> 된 제도의 위한 <b>세부절차 및 기준</b> 에 관한 제안	<b>효율적</b> 인 이행을
	※ 법 시행 이후 규정 변화가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포함	
	「연구개발혁신법」과 부합하지 않는 부처별 R&D규정, 관행, 연구기관별 내부규정·관행에 대한 개선의견	전문기관의 업무
2	관계부처·연구현장에서 개선 수요가 있는 제안	
	범부처적인 적용이 필요하거나, 다양한 유형의 연구분야 및 약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 제안	<b>견구기관</b> 에 폭넓게
	부처별·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형	<b>가 제안</b>
	창의적·도전적 연구수행을 저해하거나, 창출된 성과의 활용을 저해 교육이 대한 개선 의견	해하는 연구제도의

#### ③ 구체적인 제안

□ 제도개선 제안의 이행을 위해 현황 및 문제점, 제도개선의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

#### ○○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제출서

구분	부처명	부서명	직위	이름	전화번호
		00국	국장	-	-
주관기관	○○부		과장	-	-
		00과	사무관	-	-
유관기간	○○진흥원		본부장	-	-
#선기산	-		-	-	-

1. 제도개선 제안명:	
2. 관련 근거	※관련 법령 및 자체 규정 등
3. 제안 목적	
<ul><li>※ 제도운영 현황 및 문제점 요약 기술</li><li>4. 현황 및 문제점</li></ul>	
5. 발굴경로 □ 연구자 민원, □ 정책연구, □ 자체조사(설문, 통계 등), □ 업무처리과정 중 자체 □ 기타 ※선택한 항목 관련 자료를 [붙임]으로 제출	
6. 제도개선 의견	※ 제도 개선 방안 요약
예시	※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시
7. 규정 개정안	※ 규정명, 조항, 전후대조가 가능하도록 기제
8. `23년도 제도개선 방향 과의 관련성	
9. 기대효과	

※ 표로 작성이 어려울 경우 1∼9번 항목을 구분하여 자유형식 작성 가능

#### 참고

####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및 현장의견수렴 추진 경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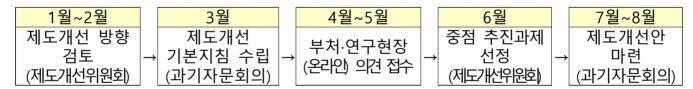
#### □ 제도개선위원회 구성·운영 개요

○ (구성) 총 15명으로 대학, 출연(연), 기업 3개 분과로 구성 ※ 위원장 1명, 분과별 위원 4명, 법률전문가 2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



○ (운영) 정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민간전문가 시각에서 검토하고(~3월), 연구현장 의견의 시의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시항 도출 및 제도개선안 검토(~8월) ※ '22년 제도개선위에서 중장기과제로 분류한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병행

#### < 정례화된 현장중심 제도개선 절차 >



#### □ 주요 추진경과

- (연구현장 간담회) 제도개선 수요 반영을 위해 주제별(연구보안, 사회문제, 국제협력, 혁신도전), 주체별(대기업, 중소·중견기업, 대학, 출연연, 국립연), 권역별 (수도·강원권, 충청권, 호남권, 영남권) 전문가 간담회 등 실시('22.11월~'23.2월)
- (제도개선위원회) 위원별 및 '22년 중장기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하고, 제도개선 기본지침(안)을 검토('23.1.27. 착수회의, 3.9. 2차회의)

#### □ 향후 계획

○ 온라인 연구현장 의견수렴("23.4~5월) 결과 검토, 시의성·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사항 등을 선정 및 분류("23.6~8월)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

담당자 한지현 사무관

연락처 전 화: 044-202-6954

E-mail: hjh6936@korea.kr